定款

사단법인 국제코칭협회

사단법인 국제코칭협회 정관

제정 2007.12.21.

개정 2009.03.12.

개정 2011.03.01.

개정 2012.02.01.

개정 2023.10.23.

개정 2024.07.25.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데 공헌하고 회원의 전문성을 개발하며 회원 상호간의 교류 및 발전을 위한 활동과 권익옹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명칭) 이 법인은 "사단법인 국제코칭협회"(이하 "협회"라 한다.)라 칭하며, 영문명칭은 "Worldwide Coaching Network"라 하고 약칭은 WCN Korea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
- ① 이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- ② 지부설치 및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4조(사업)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 - 1. 회원 간의 코칭과 NLP의 학습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연수
 - 2. 회원의 평생학습에 필요한 코칭과 NLP 관련 분야 교재, 도서 및 홍보물 등 발행
 - ②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 - 1. 코칭과 NLP관련 민간자격증 발행

제2장 회원

- 제5조(회원자격)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.
 - ②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.

- 제6조(회원구분) ① 개인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.
 - 1. 정회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
 - 2. 후원회원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회원
 - ② 단체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.
 - 1. 회원기관 협회에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며 이 법인에 가입한 기관
 - 2. 제휴기관 협회와 상호 필요에 의해 협력 및 교류를 목적으로 가입한 기관
 - 3. 후원기관 협회의 발전을 위한 후원 중이거나 서류 상 후원을 약속한 기관
- 제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- 제8조(회원의 탈퇴) 이 법인의 회원은 협회의 이사장에게 탈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.
- 제9조(회원의 상벌) ①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 - ②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·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, 기타 이 정관에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 사장이 제명,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 - ③ 회원의 상벌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3장 임원

- 제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- 1. 이사 5명
 - 2. 감사 2명
 -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.
- 제11조(상임이사)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.
 -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.
- 제12조(임원의 임기)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 다만,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.
 -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제13조(임원의 선임방법)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.
 -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-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.

- 제14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. 다만, 이사장
 - 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제15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.
 -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·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(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)을 처리한다.
- 제16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, 그러하지 못한 경우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7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- 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-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3.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,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
-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5.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,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4장 총회

제18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- 2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- 4.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
- 5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6. 사업계획의 승인
- 7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19조(총회의 소집)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,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

- ② 정기총회는 년 1회이며, 매 회계연도 종료 전 30일 내에 소집하고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, 이메일, SNS로써 통지할 수 있다.
-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.
- ⑤ 총회는 전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부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.

- 제20조(총회의 의결정족수)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 -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제21조(총회 소집의 특례)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- 2.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- 3.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- ② 총회 소집권자가 귈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- 제22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- 1.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 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제5장 이사회

- 제23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· 결정한다.
 -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- 2.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 - 3.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 - 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- 5.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- 6. 시행세칙의 제 · 개정에 관한 사항
 - 7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24조(의결정족수)

-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 수 참석으로 개회한다.
-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제25조(의결제척 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다.
 -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- 제26조(이사회의 소집)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- 제27조(이사회소집의 특례)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- 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- 2.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-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3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
제28조(서면의결 금지)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.

제6장 재산 및 회계

- 제29조(재산의 구분)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 -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유영재산으로 한다.
 - 1.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- 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,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 - 3.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 - 4. 세계(歲計)잉여금 중 적립금
 -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 - 1.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.
 - 2.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.
- 제30조(재산의 관리) ① 제28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하거나,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②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.
 -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(제1할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.)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-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(현재의 기본재산목록)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- 제31조(재산의 평가)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
- 제32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,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- 제33조(회계의 구분)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 -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,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 -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- 제34조(회계원칙)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근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- 제35조(회계연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36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37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 - 1. 이 법인의 설립자
 - 2. 이 법인의 임원
 -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 - 4.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 -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- 제38조(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)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.
 - 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
 - 2.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
 - 3.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

제7장 사무국

- 제39조(사무국설치)① 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.
 -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- 제40조(사무국장과 직원의 임명)①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 - ② 사무국장 이외의 직원은 사무국장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 - ③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사무국의 직원은 유급으로 하되 그 급여액과 지급 방법 등 사무국에 관한 사항과 처무규정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한다.

제8장 보칙

- 제41조(정관변경)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1. 변경사유서 1부
 - 2. 정관개정안(신 · 구대조표를 포함한다) 1부
 - 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
 - 4.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, 처분재산의 목록,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.
- 제42조(해산)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제43조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.
- 제44조(시행세칙)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한다.
- 제45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총회에서 승인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사단법인 국제코칭협회

